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공 보</h1> <p>제830호 2021. 11. 10.(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55호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2
제2021-156호 웅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3
제2021-157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제2021-1558호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
제2021-1592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제2021-1594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5
제2021-159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63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가북면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 업 비: 5,000백만원(국 2,798, 도 359, 군 1,843)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일원
 - 나. 세부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따뜻한마음센터, 따뜻한마음마당 조성
 - 지역경관개선: 만남의 거리 상가간판 정비
 -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2020. 1. ~ 2023. 12.(4년간)
7.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 (☎940-8272)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응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응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응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응양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비: 4,000백만원(국 2,800, 도 360, 군 840)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응양면 노현리 일원
 - 나. 세부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활력충전소 조성
 - 지역경관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및 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시행기간: 2020. 1. ~ 2023. 12.(4년간)
7.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00)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167 등 4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4길 20-2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478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167	20211110	20091228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3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길 94	20211110	20170719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206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3길 145	20211110	20180502	거창부사 홍세영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에서 분기되는 도로에 일련번호를 활용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89-43	20211110	200904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4길 20-2		20211110	20090401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네번째 도로	건물번호 폐지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4길 20-1		20211110	20090401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네번째 도로	건물번호 폐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21. 11. 4. ~ 11. 18.(15일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TEL(055) 940 - 349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일

거창군수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청구 주민수의 범위 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감사청구인 수(조례로 정하는 수) : 종전 190명 → 150명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라. 전화 055-940-3062, 팩스 055-940-3029, 이메일 promethaus@korea.kr

붙임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청구 주민수의 범위 조정에 따라 그 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1)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 ⇒ (변경) 「지방자치법」 제21조

나. 감사청구인 수 변경(안 제2조)

1) 감사청구인 수(조례로 정하는 수) : 종전 190명 → 15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11.9.~11.23.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를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19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

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1594호

거창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일

거 창 군 수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거창군 실정에 맞는 인증 기준 마련으로 거창푸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

- 가.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먹거리위원회로 통합(안 제4조)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수탁기관 대상기준 확대(안 제9조)
-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0조)
- 라.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

<시행규칙>

- 가. 조례개정으로 인한 관련 내용 수정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 신설(안 제2조~제6조)
- 다. 인증 관련 규정 신설 및 농산물 인증기준 변경(안 제7조~제24조)

3. 개정 조례(규칙)안: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0. ~ 2021. 11. 3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농촌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다. 우편번호: 50147, 전화/팩스: 055-940-8294/055-940-8229

이메일: ksk6035@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2]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행복농촌과장

1. 제안이유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거창군 실정에 맞는 인증 기준 마련으로 거창푸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먹거리위원회로 통합(안 제4조)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수탁기관 대상기준 확대(안 제9조)
-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0조)
- 라.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489백만원(군비)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1. 10. ~ 11. 30.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의뢰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 그리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5. “참여주체”란 거창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6.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거창푸드의 재배방법, 품질 및 유통단계가 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군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금목표
4. 인증에 관한 사항
5. 안전하고 건전한 생산을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
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거창푸드 생산) 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거창푸드 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거창푸드 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거창푸드 소비) ① 거창푸드는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비용 등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수탁기관
 - 나. 농업인 단체
 - 다. 생산자 단체

라. 소비자 단체

마. 가공·유통분야 단체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군수는 센터 및 거창푸드 활성화를 위해 거창푸드 상품화, 선전 판매, 운반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농장·농업인 직거래장터) ① 군수는 군의 유희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4조(인증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인증 품목 및 기준) 인증은 농산물, 축산물,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세부 품목 및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둔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식품 시료 채취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 여부, 정지 및 취소
 2.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농업인 단체
 - 나. 생산자 단체
 - 다. 소비자 단체
 - 라. 가공·유통분야 단체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 부여) ①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

② 인증표시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표기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인증식품의 품질과 생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인증을 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의 홍보·지원) 군수는 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해 참여주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에 대한 교육
2. 인증식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
3. 인증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
4.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21조(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군수는 군민에게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과 인증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행복농촌과장

1. 제안이유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거창군 실정에 맞는 인증 기준 마련으로 거창푸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개정으로 인한 관련 내용 수정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 신설(안 제2조~제6조)
- 다. 인증 관련 규정 신설 및 농산물 인증기준 변경(안 제7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489백만원(군비)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1. 10. ~ 11. 30.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의뢰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①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할 경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및 조례 제17조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을 대표하고 위원회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거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

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회등 운영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창푸드 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② 위원회등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거창푸드 인증대상)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인증대상 요건)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대상 농산물 및 축산물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을 말한다.

- ② 제7조에 따른 인증 대상 농산물가공품의 원재료·부재료는 군에서 생산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재료·부재료는 다른 지역

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농산물가공품의 특성상 함유비율, 가공방법 등이 특별한 경우 군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준) ① 인증대상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사 및 성분분석 또는 유해성분에 대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조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농산물가공품: 원재료·부재료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축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조(인증식품의 취급기준) 인증식품은 제9조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 인증식품별 취급원칙, 안전성검사, 보관 및 관리, 표기사항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방법에 적합해야 한다.

제11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받은 증명서류
2.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3.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인증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인정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인증신청 시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인증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3조(인증심사원)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2.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공무원
- ② 인증심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4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현장심사) ① 인증심사원은 별표 2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

- ②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여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재료·부재료를 인증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7조(인증 심의) ① 군수는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심사 후 거창군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해서는 인증 상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8조(인증의 표시 등) ① 인증번호 및 인증표시는 별표 3 및 별표 4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상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인증번호, 품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유효기간의 사용기간 연장은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인증 취소) ① 군수는 인증식품이 제9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2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사후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

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2조(인증식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조치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지역 및 제휴푸드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0조에 따른 인증식품의 취급과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인증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교육) ① 인증 및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 인증 관련 교육을 한 번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인증교육은 군에서 주최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은 교육참여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4조(조사 참여)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7조 관련)

거창푸드 인증 대상품목

구분	종 류	분류 번호	품 목
농 산 물	곡 류	101	쌀, 찰쌀, 현미, 보리쌀, 율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옥수수(팝콘용), 옥수수쌀 등
	과실류	102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등
	채소류	103	마른고추, 고추,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피망, 딸기, 수박, 조롱수박, 풋옥수수, 풋완두콩, 풋콩, 양파, 마늘, 깎마늘, 마늘종, 대파, 쪽파, 무, 알타리무, 결구배추, 양배추, 당근, 시금치, 들깻잎, 결구상추(양상추), 부추, 마, 우엉, 미나리, 고구마순, 쪽갓, 양미나리(셀러리), 케일, 고들빼기, 머위, 달래, 신립초, 갓, 콩나물 등
	서 류	104	감자, 고구마 등
	특작류	105	참깨, 들깨 등
	버섯류	106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축 산 물	식육류	20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뼈 등
	알류 젖류	202	계란, 우유 등
가 공 품	장 류	301	고추장, 간장, 된장, 메주, 춘장, 청국장 등
	잼 류	302	딸기, 사과, 포도 등
	소스류	303	각종 소스류
	유지류	304	참기름, 들기름 등
	두부류	305	두부, 순두부, 색두부, 유부, 콩비지, 묵 등
	주스류	306	사과주스, 딸기주스 등
	제과류	307	빵, 라면, 과자, 국수 등
	반찬류	308	김치류, 조림류, 볶음류, 무침류, 나물류, 국찌개류, 절임류 등

※인증대상품목은 거창푸드 발전단계에 맞춰 군수가 추가 할 수 있다.

현 장 심 사 표 (농산물)

신청인 (대표자)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재배 작목명	소재지 지번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kg)

거창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인 증 심 사 표 (농산물)

I.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거창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I. 재배방법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 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3.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II. 생산물의 품질 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거창먹거리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허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3. 인증품 출하 시 거창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현 장 심 사 표 (축산물)

신청인 (대표자)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사육 축종명	소재지 지번	사육두수 (마리)	연간 출하두수 (마리)
거창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인 증 심 사 표 (축산물)

I.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창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I. 사육시설 입지 및 기자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사육시설이 소재한 주변의 환경은 가축을 사육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주변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 사육시설의 기자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고 있으며,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II. 가축방역 및 생산시설 관리실태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경우가 없거나, 노출된 경우 이를 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관련내용을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3. 생산(사육)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분뇨의 처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현 장 심 사 표 (가공품)

신청인 (대표자)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가공식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함유량%)	부재료명 (생산지, 함유량%)	원·부재료 거창푸드 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거창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인 증 심 사 표 (농산물가공품)

I.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거창푸드 인증 농축산물을 원·부자재로 50%이상 사용 여부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I. 생산시설 입지 및 작업 환경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가공제조시설이 소재한 주변의 환경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며, 매일 물청소를 하되 청소 후 물기가 없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II. 원료 및 자재, 제품 보관 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제품은 별도 구역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제품의 성질에 따라 냉장,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출고 시 선입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2. 식품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V.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1. 생산자 및 작업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소독을 거쳐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거창푸드 인증번호 부여방법

○○ - ○○○ - ○○○
(인증 연도) (분류번호) (인증 일련번호)

※ 표기방법 설명

- 인증연도는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따른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 예시

- 2021년도에 과실품목 “사과”에 처음으로 인증을 부여 할 경우
『21 - 102 - 001』로 표기한다.
- 사용권을 부여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인증연도를 변경한다.
 - 당초인증: 21 - 102 - 001
 - 기간연장: 22 - 102 - 001

거창푸드 인증표시 매뉴얼

1. 모양 및 색상

	
공동브랜드	거창푸드 인증표시 (인증상표)

2. 도안의 설명

-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창한 명품도시 거창을 함축적으로 표현
- ‘거창’의 고유 지명과 ‘거창하다’는 형용사를 조합한 중의적 의미로 거창의 속성을 극적으로 나타냄
- 거창의 지명과 거창한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명확히 드러냄
- 대한민국 으뜸 자치단체의 지향성을 담아 <한>을 나라를 뜻하는 한자로 치환해 중앙에 배치하고 좌우에 거창을 대칭으로 배열해 반복에 의한 시각적 환기성을 강조

3. 디자인 설명

- 주황색 계열은 오곡이 무르익은 거창의 황금빛 들판을 나타냄
- 녹색은 거창의 청정 환경을 의미
- 두 색상이 결합된 붉은 색은 거창의 열정과 밝은 내일을 표현
- 전체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창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

4. 매뉴얼

- 작도는 거창푸드 인증상표사용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해야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 매뉴얼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본 상징물을 활용하고,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별도 논의 후 제한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앞쪽)

<p style="text-align: center;">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인증심사원증</p> <p>소 속:</p> <p>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거 창 군 수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 <p style="text-align: center;">(35mm × 45mm)</p>
---	---

49mm × 75mm(인쇄용지(특급)190g/m²)

(뒷쪽)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주의사항</p>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2. 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현장심사 및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보완·시정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

거창푸드 인증서				
인 증 번 호				
사 용 권 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재배필지주소			
	인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인)</p>				

거창푸드 인증 관리대장

(위원회보관용)

일련 번호	인증번호	인증자			내 용		비 고
		성 명 (성별)	연락처	주 소	대상품목	승인일자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운영비, 로컬푸드 택배비, 로컬푸드 마케팅비,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비, 인증에 요구되는 검사비, 전담 인력 인건비(1명), 인증심의위원회수당, 인증 교육비, 인증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나. 관련조문 : 조례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및 거창푸드 인증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
-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 비용(a-b)		437.5	492.2	455.6	455.6	455.6	2,296.5
세출	도비	-	-	-	-	-	-
	군비	437.5	492.2	455.6	455.6	455.6	2,296.5
	소계(a)	437.5	492.2	455.6	455.6	455.6	2,296.5
세입	도비	-	-	-	-	-	-
	소계(b)	-	-	-	-	-	-

3. 관련 의견

거창푸드종합센터 및 거창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며,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비, 교육비, 인증제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의 확보가 필요함. 향후 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인증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 : 30,000천원
- ▶ 로컬푸드 마케팅 지원 : 20,000천원
- ▶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20,000천원
-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지원 : 268,000천원
- ▶ 거창물 운영지원 : 76,000천원
- ▶ 검사비 : 20,000천원
 - 200,000원x100건=20,000천원
 - ※ 2023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개소로 자체 검사 가능
- ▶ 전담 인력 인건비(1명) : 34,788천원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액
 - 기본급 : 82,140원x247일=20,289천원
 - 유급휴일 : 82,140원x65일=5,339천원
 - 연차유급휴일 : 82,140원x15일=1,232천원
 - 퇴직금 : 82,140원x30일x730일/365=4,928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3,000천원
- ▶ 인증심의위원회수당 : 2,520천원
 - 70,000원x3명x12개월=2,520천원
- ▶ 인증 교육비 : 1,000천원
 - 5,000원x100명x2회=1,000천원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 20,000천원
-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비 : 3,400천원

작성자 :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카. (생략)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하. (생략)

4.~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4. (생략)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9.(생략)

「축산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099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 3.~10의2. (생략)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 6. 14., 제정]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

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타법개정]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나.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이다.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 *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 *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 임. 예)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3. 용어의 정의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4. 위탁료 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 2)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써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총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퇴직급여총당금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5)을 곱한 금액

-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건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료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교통비·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

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5)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 입장료·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 기타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5.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산정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1)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 (최고가 입찰)
- 2)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따른다.
- 3)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4)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5)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라.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 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 함

나. 계약금액 조정

-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관리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수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6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제31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

증한 경우

3의2. 경미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2. 2.>

⑤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③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2020. 3. 24.>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거창군 공고 제2021 -159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거창군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규칙에 인용된 조문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24조)

- 1) 24개 조례 42개 조문
- 2) 위임 조문 변경
- 3) 「지방자치법」 전반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상 용어 변경(안 제25조~제28조)

- 1) 4개 조례 22개 조문
- 2) 군수 ⇒ 군수와 의장
- 3) 「지방자치법」 제103조

다. 규칙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5조)

1) 5개 규칙 5개 조문

2) 위임 조문 변경

3)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9조, 제12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제66조~제70조, 제83조

3. 제정 조례·규칙안: 붙임 1,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 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제때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24조)

- 1) 24개 조례 42개 조문
- 2) 위임 조문 변경
- 3) 「지방자치법」 전반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5조~제28조)

- 1) 4개 조례 22개 조문
- 2) 군수 ⇒ 군수와 의장
- 3) 「지방자치법」 제10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 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3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42조제1항”를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를 “「지방자치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반 설치조례」의 개정) 거창군 반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9조(「거창군 공인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반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

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로 한다.

제17조(「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18조(「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20조(「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

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21조(「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을 “법 제117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42조제2항 단서”를 “법 제51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2조(「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4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전단, 제23조제1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부군수”를 “부군수와 거창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7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8조(「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중 “군수”를 “군수·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통보 조례 위임사항

조례위임사항	구분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p>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④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p> <p>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p>	<p>종전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자체에서는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p>
<p>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p>

	<p>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과 의회규칙 등에 따를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만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p>
<p>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지자체의 현행 민간위탁 조례의 제1조 목적 조문 등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p>	
<p>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부칙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상해·사망등의보상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43조(겸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종전 제35조제3항이 제43조제3항으로 이동규정되어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p>	<p>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p>
<p>제53조(정례회)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종전 제44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p>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기속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참고하기 바람
제54조(임시회)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중전 제45조제2항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정하고 있던 규정에서 조례위임사항으로 변경됨. 부칙 제18조에 따라 조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부칙 제18조(임시회소집요구등에관한경과조치)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함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음

[붙임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상 인용조문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제때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5조)

- 1) 5개 규칙 5개 조문
- 2) 위임 조문 변경
- 3)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9조, 제12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제66조~제70조, 제8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상 인용조문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조(「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개정)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

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5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